#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34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이학영·조 국·김성환

박홍근 · 김교흥 · 김영배

한정애 · 강득구 · 김영진

안호영 • 전재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4호).

법률 제 호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을 "치료감호시설"로, "감호소·치료감호시설"을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을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도소장 등) ①・② (생	제3조(교도소장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③ 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u>감</u>	<u></u> ੋਂ]
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u>료감호시설</u>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	법경찰관리)
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	
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	
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u>	4. <u>치료감호시설</u>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	
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의2. ~ 53. (생 략)	4의2. ~ 53. (현행과 같음)